

2006. 9.

수 신 : 제천시의회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
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부.

발의자 : 성명중 의원 (~~성명중~~ ~~날인~~)

외 2인

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
의안발의서명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고
성영중		
유영화	Simha	
조덕희	조덕희	

##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

의안번호	1101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6. 9. .  
발의자 : 성명중 의원외 2인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제천시의회의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○ 제2조(구성)
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#### ○ 제4조(심문)

-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자, 징계대상자,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#### ○ 제5조(발언 및 변명)

-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,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
-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

#### ○ 제7조(제척과 회피)

-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### 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

- 붙임 1.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부.  
 2. 지방의회 운영관련 조례 표준안 공문 1부.  
 2.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 1부 끝.

##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

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###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4조(심문)**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자, 징계대상자,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발언 및 변명)**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.

**제7조(제작과 회피)**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

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**제8조(위임)**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### 부            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칙의 개정)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77조, 제78조, 제79조, 제89조, 제92조, 제93조의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“자연·인간·문화가 상생하는 21C 일등 제천”



## 제천시



수신자 제천시의회의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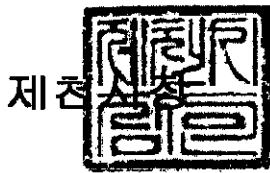
(경유) 의회사무국장

제목 지방의회 운영관련 조례 표준안 통보

1. 행정자치부 자자제도팀-2419(2006. 6. 23)호 및 충청북도 기획관실-2925(2006. 6. 26)호와 관련입니다.

2. 2006. 4. 28 개정·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및 제50조의2에 의하여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된 「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」 와 「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규칙」 표준안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법규 제·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불임 : 조례·규칙 표준안 1부. 끝.



★ 지방행정주사보 김경옥      의회사무 담당 최석영    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

전결 06/26  
최한섭

첨조자

시행 기획감사실-4411 ( 2006.06.26. ) 접수 의회사무국-901 ( 2006.06.27. )  
우 390-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15(천남동 12-2) / <http://www.okjc.net>  
전화 043)640-5042 / 전송 043)640-5029 / kkouk111@hanmail.net / 공개

## 2.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0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소위원회)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·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·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·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 개회의 통지)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이하 "심사요구의원"이라 한다)
2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대상자(이하 "심사 대상의원"이라 한다)

제6조(심문)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제7조(발언 및 변명)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

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.

제8조(증빙서류 등의 제출)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·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9조(통고)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,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10조(제척과 회피)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11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)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..

제12조(위임)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 칙 :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4조의3 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 
②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0조의2 (윤리특별위원회)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